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6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이주환·엄태영·최승재

배준영 · 윤창현 · 김기현

양금희 · 지성호 · 한무경

이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에서 정관의 변경,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등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총회에 오래전 사망한 조합원의 명의로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는 등 위·변조가 적발되었고,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도 조합에서 정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와 함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3호).
- 나.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 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45조제6항 및제7항 신설 등).
-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 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감독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4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총회의 의결방법 등"을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및 본인확인방법 등"으로 한다.

- ⑥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려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추진위원회"를 "시·도지사,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조례"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
|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해임) ①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 | |
| 원이 될 수 없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3 |
| 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 | |
|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
| <u>2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u>5년</u> |
| 4. • 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⑤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⑥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
| | 을 의결하려는 경우 제5항에 |
| |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
| |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
| |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 |
|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u><신 설></u> | ⑦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 |
| | 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 |
| | <u>여야 한다.</u> |
| <u>⑥</u> (생 략) |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

- ②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① · ② (생 략)
 -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 45조제3항·제4항·<u>제6항</u> 및 <u>제7항</u>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 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 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 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로 본다.
-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u>시·도지사</u>는 정비사

|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 | | |
|-------------------|--|--|
| 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 | | |
|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 |
| ①・② (현행과 같음) | | |
| ③ | | |
| | | |
| | | |
| 제8항 | | |
| 제9항 | | |
| | | |
| | | |
| | | |
| | | |
|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 | | |
| 보의 종합관리) ① | | |
| | | |
| | | |
| | | |
| 시 • 도 | | |
| 지사, 추진위원회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 | |
|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과 또는 | | |

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 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u>시·도조례</u>로 정한 다.

<신 설>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저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u>시·도지사</u> |
|----------------------|
| |
| |
| ② |
| |
| |
| <u>• 도조례</u>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 |
| 사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 |
| 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
|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
|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
|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
| <u>라야 한다.</u> |
| ∥128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 |
| 행과 같음) |
| ②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u>2</u> 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 |
| | 관리시스템 구축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